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15

발의연월일: 2021. 5. 11.

발 의 자: 강선우·강병원·김승원

김정호 · 김종민 · 위성곤

윤관석 • 윤재갑 • 이수진

정춘숙ㆍ정필모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 나 지급대상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마약류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여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 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	제54조(보상금)
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서 신	다만, 공무
<u>설></u>	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
	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u>다.</u>